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1. 18 선고 2015가합543097 판결 [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신용보증기금

피고 1. A 주식회사

2. B

3. C 주식회사

변론 종결 2015. 11. 4.

판결 선고 2015. 11. 18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,194,897,198원 및 그 중 1,194,893,346원에 대하여 2015. 6. 8.부터 2015. 7. 17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,194,897,198원 및 그 중 1,194,893,346원에 대하여 2015. 6.

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09. 11. 18. 피고 A 주식회사(이하 '피고 A'이라 한다)와 사이에, 한도금액 1,500,000,000원, 한도거래기간 2009. 11. 18.부터 2011. 11. 16.까지, 개개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 2009. 11. 18.부터 2010. 11. 16.까지, 개개의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기한 2011. 11. 16.까지인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피고 B, 피고 C 주식회사(이하 '피고 C'이라 한다)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, ① 2009. 11. 18. 보증금액 1,000,000,000원, 보증기한 2010. 11. 17.(최종적으로 보증금액은 855,000,000원으로, 보증기한은 2015. 11. 13.로 각 변경되었다)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,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,000,000,000원을 대출(이하 '제1대출'이라 한다)받았고, ② 2009. 12. 15. 보증금액 475,000,000원, 보증기한 2010. 12. 14.(최종적으로 보증금액은 340,000,000원으로, 보증기한은 2015. 12. 11.로 각 변경되었다)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,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,000,000원을 대출(이하 '제2대출'이라 한다)받았다.

다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,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고,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. 12. 1.부터 현재까지 연 12%이다.

라. 그 후 원고는 2015. 3. 25.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5. 3. 24. 피고 A의 당좌거래정지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받았고, 이에 원고는 2015. 6. 8. 중소기업은행에게 제1, 2 각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1,206,610,346원(제1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863,112,474원(= 원금 855,000,000원 + 이자 8,112,474원) + 제2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343,497,872원(= 원금 340,000,000원 + 이자 3,497,872원)을 대위변제하였는데, 같은 날 위 대위변제금 중 11,717,000원을 회수하여 위 회수금에 대하여는 3,852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,194,897,198원(= 미회수 대위변제금 1,194,893,346원(대위변제금 1,206,610,346원 - 회수금 11,717,000원) + 확정손해금 3,852원)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1,194,893,34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. 6. 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5. 7. 17.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2015. 9. 25.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)이 정한 바에 따라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한편, 원고는 2015. 10. 1. 이후에도 연 2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, 2015. 9. 25.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%로 변경되었고,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. 10. 1.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5. 9. 30.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20%의 법정이율이, 2015. 10. 1.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연 15%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,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. 10. 1. 이후로 연 15%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각

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종원

판사한동석

판사박민